「정선 청년복합공간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

강원디자인진흥원
Gangwon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최종 협상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목 차 -

Ⅰ. 과업개요 ····· 3
1. 과업명 ····· 3
2. 과업기간 ····· 3
3. 사업비 ····· 3
4. 과업 배경 및 목적 ····· 3
5. 과업범위 ····· 3
6. 발주기관 및 연락처 ····· 5

Ⅱ. 과업 내용 ····· 6
1. 기본 조사분석 및 디자인 전략 구축 ····· 6
2. 청년복합공간 통합디자인 개발 ····· 7
3. 디자인심의 및 각종 인허가 등 협의자료 준비 ····· 9
4. 청년복합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 ····· 9
5. 지식재산권 출원 ····· 16

Ⅲ. 성과품 납품 ····· 17
1. 작성 기준 ····· 17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 17
3. 성과품 납품 목록 ····· 18

Ⅳ. 과업 수행 지침 ····· 19
1. 일반원칙 ····· 19
2. 자료의 적용 ····· 20
3. 저작권 및 과업수행자의 의무 ····· 21
4.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 21
5. 관계 기관 협의 및 자료 요청 ····· 22
6.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22
7. 과업 보안에 대한 의무 이행 ····· 22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23
9. 기타사항 ····· 24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정선 청년복합공간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6. 30.(화)까지

3. 사 업 비 : 98,000,000원(금구천팔백만원)

※ 부가가치세 및 조사분석, 디자인, 각종 부대 경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 포함

4.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정선역 유휴공간에 생동감 있는 지역 문화공간 조성으로 청년인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제고 필요

나. 이에 청년 활동과 전시를 위한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공간 디자인 및 연출로 청년 간 상생협력 네트워킹 공간 구현

※ 통상적으로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나, 본 과업에서는 정선군에서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청년층부터 중년층까지의 사람을 아울러 지칭함

5.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12-30 일원

나. 내용적 범위

1) 기본 조사분석 및 디자인 전략 구축
2) 청년복합공간 통합디자인 개발
3) 디자인심의 및 각종 인허가 등 협의자료 준비
4) 청년복합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
5) 지식재산권 출원
6) 그 밖에 과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일체

다. 사업대상지 개요

구분	내용
대상지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12-30 일원
대지면적	6,569㎡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철도보호지구 등
규모	지상1층, 연면적 99.00㎡ 이내
용도	가설건축물(관광·문화행사·회의 등을 위함)
주요시설	다목적홀, 라운지, 휴게쉼터, 창고 등

※ 참고사항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따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건축, 설치, 신축·개축·증축 등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정선군 건축조례(시행2024. 5. 13.) 제19조 2항의 12에 따른 가설건축물

※ 본 과업에서 조성하는 청년복합공간은 가설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0조, 제42조, 제43조 등에 따라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 대지안의 조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

7) 위성사진 및 지적도

위성사진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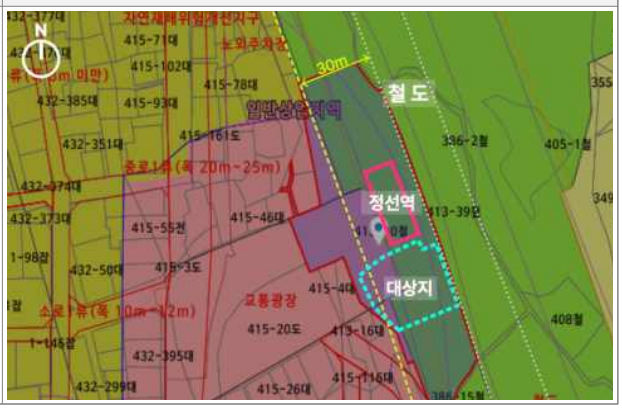

8) 현황사진 ※ 대상지 기본자료(현황실측도 등) 열람 문의 : 033-260-5542 / gyj1201@gidp.kr

사업대상지 전경

정선역 전경

라. 과업 추진일정(안)

월 / 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기초자료 조사·분석	●	●			
디자인 개발		●	●	●	
디자인심의			●	●	
실시설계			●	●	●
설계도서 및 매뉴얼 작성				●	●
홍보영상 및 굿즈 제작				●	●
과업보고		착수보고	청년 설명회		중간보고

※ 전문가 자문 및 과업수행자의 요청 혹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수시보고 진행

6. 발주기관 및 연락처

가. 강원디자인진흥원 공공디자인팀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145번길 46 (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공공디자인팀)

다. 연락처 : ☎.033-260-5542 / E-mail : gyj1201@gidp.kr

Ⅱ 과업 내용

1. 기본 조사분석 및 디자인 전략 구축

가. 대상지 현황 조사분석 및 관련법규 검토

1) 정선역 및 사업대상지 주요현황 분석

2) 정선군 청년(사용자) 및 정선군 관광객 일반현황, 청년지원시설 등 조사

3) 관련법규 및 법령, 제도, 상위계획, 가이드라인 등 검토

4)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및 디자인 트렌드 분석

5) 국내 청년지원센터 현황조사 및 한계점 분석

6) 그 외 과업 추진을 위한 각종 조사·분석·검토 등

나.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 리서치

1) 청년복합공간 주 사용자(청년, 주민, 관광객 등) 관찰 및 인터뷰

2) 정선군 및 정선도시지원센터 등 관련부서 및 관계자 수요조사

3) 사용자 리서치를 통한 공간, 환경, 디자인, 인프라 등의 수요 및 문제점 도출

4) 청년복합공간 주요 프로그램 및 청년활동 컨텐츠 적용방안 제안

다. 디자인 방향 및 연출 전략 수립

1) 조사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복합공간 디자인 및 공간 연출 전략 수립

2) 정선 청년의 비전과 활동 지원을 위한 정선형 청년복합공간 디자인 컨셉 도출

3) 다양한 사용자(청년, 관광객, 지역주민 등)를 고려한 공간 구성 및 레이아웃 구성, 동선 계획

4) 기존 유사공간의 한계점 분석 결과를 반영한 차별화되는 공간 디자인 전략 제시

2. 청년복합공간 통합디자인 개발

가. 정선형 청년복합공간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수립

1) 정선군에서의 지속적인 청년 네트워킹 도모를 위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브랜딩 전략 및 마케팅 방안 마련

2) 정선군 경제, 관광, 문화, 도시재생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선형 청년복합공간의 적합한 네이밍 및 스토리텔링 제안

나. 디자인 시스템 구축

1) 디자인 개발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청년복합공간 운영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제안하여 적용

3) 디자인 항목

연번	구분	디자인 항목	
1	기본시스템 (Basic System)	- 심볼마크 - 로고타입	- 색채 시스템 - 그래픽모티프 & 패턴
2	응용시스템 (Application System)	- 서식 및 표지류 - 상품류	- 홍보류 - 옥외설치물
3	공간디자인	- 공간 내·외부 컨셉 - 가구(제작가구에 한함)	- 안내사인물(사이니지)

※ 응용시스템 및 공간디자인 세부항목은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공간디자인 항목의 경우 실제 제작·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도면 必

다. 공간 및 사이니지 디자인 개발

1) 공간 조성 내용(Space Program)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
1층	다목적홀(전시·홍보·행사·교육·회의 등)	84.00	설계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층수, 배치, 면적 조정 가능
	오픈라운지(탕비공간, 안내데스크)	9.00	
	창고	6.00	
	소계	99.00	
다락	창고	-	연면적 해당없음 (다락 층고 높이기준 준수)
	소계	-	
외부공간	커뮤니티 광장(전시·홍보·행사공간)	-	연면적 해당없음
	청년쉼터(휴게·녹지공간)		
	주차장(4대 이상 / 장애인 1대 포함)	-	
	소계	-	
합계		99.00	

2) 공간 설명

층별	공간구분		공간 설명
가변형실내공간	기본형	다목적홀	- 가변형·오픈형 공간 구성으로 행사 형태에 따른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성 - 야외공간과 연계하여 확장할 경우 사용객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다목적 공간
	응용형	전시·홍보실	- 청년 활동 성과 전시 및 디자인 전시, 홍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위한 공간 - 가변형·이동형 벽을 활용한 전시대 구성
		교육실	- 청년 자기개발 및 창작활동을 위한 교육 공간 - 대그룹, 소그룹 등 교육 형태에 따른 책걸상, 탁자 등 배치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
		회의실	- 사무실, 회의실 등 필요에 따라 2~3 구역으로 변형 가능한 회의공간
고정형실내공간	오픈라운지		- 출입구와 창고, 다목적홀로의 이동을 위한 완충공간 - 청년복합공간 내부의 첫 인상을 부여하는 만큼 차별성 있는 공간 제안 - 탕비공간, 안내공간 등 통합하여 구성 - 상주 관리인을 위한 기본 데스크 및 의자 구비
	창고		- (1층) 교육·행사·전시 등 공간 활용에 따른 가구 및 물품 보관장소 - (다락) 청년복합공간 시설 운영 관련 물품 및 비품 등 보관장소
외부공간	커뮤니티 광장		- 평상시는 자유롭게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외부 테라스 및 차광막 등 활용 - 프리마켓, 야외 전시행사, 강연 등 이벤트 발생 시 내부공간과 연계하여 확장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청년쉼터		- 청년 및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 및 녹지공간 - 조경 및 식재, 공공시설물(파고라, 천막, 벤치, 썬룸 등) 적극 활용
	야관경관		- 사업대상지 주변 범죄예방환경설계 및 경관디자인 연출을 위함 - 야간 행사를 고려한 커뮤니티 광장, 청년쉼터의 심미성 있는 조명 및 야간경관 연출
	주차장		- 시설 사용에 용이하고 동선 혼잡이 없도록 조성 - 기존 주차대수 이상 조성 / 총 4대수(장애인 1대 포함) - 주차형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공간별 프로그램 통합·분리를 위한 공간 구성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3) 사이니지(안내사인)

연번	구분	디자인 항목	
1	내부 안내사인	- 방향유도사인 - 종합안내사인(벽 부착형)	- 실명 사인(창고, 라운지 등) - 동선유도사인
2	외부 안내사인	- 메인 간판 - 현수막 게시대	- 메인 지주사인 - 주차장 지주사인
3	기타	- 주차금지(이동형) - 금연구역(이동형)	- 장애인 전용 주차안내사인 - 정보안내 픽토그램 등

※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국문과 영문 혼용하여 표기

라. 디자인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작

1) 디자인 개발 항목에 대하여 디자인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활용가능하도록 작성

2) 매뉴얼 관리지침, 디자인 개요 및 컨셉 설명, 매뉴얼 구성, 기본시스템, 응용시스템 등으로 목차 구성

3) 디자인 적용 단계의 이해를 위한 목업 이미지 및 시안 이미지 첨부

마. 홍보 영상 및 굿즈 시범제작

1) 개발된 청년복합공간 브랜드와 공간 내외부를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40초 내외 분량의 홍보영상 제작

2) 홍보영상은 가로형으로 하며 세부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

3) 디자인 응용시스템의 상품류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청년복합공간 홍보를 위한 굿즈 및 기념품 시범제작(품종 및 수량은 별도 협의)

3. 디자인심의 및 각종 인허가 등 협의자료 준비

가. 코레일 디자인 심의를 위한 자료 제작

나. 필요 인허가, 기타 심의 수행 및 협의자료 제작

1) 인·허가 과정에서 보완, 검토 등의 요구사항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

2) 인·허가나 협의 승인 시에 필요로 하는 제반비용의 부담은 과업수행자가 함

4. 청년복합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청년복합공간 마스터플랜 제시

1) 정선역~사업대상지를 연계한 청년복합공간 마스터플랜 제시

2) 주변 환경 및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경 및 산책로 등 연출방안 모색

나. 야간조명 연출 계획 수립

1) 야간 행사 및 활동을 고려한 심미성 있는 조명 연출 및 야관경관 계획
2) 야간 산책로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주민 및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 조도와 디자인으로 계획
3) 사후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설계
4) 정선군 상위계획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

다. 실시설계

1) 실시설계는 청년복합공간과 안내사인, 공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포함하고 관련 지침과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2) 설계도면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각종 단면도 및 상세도로 구성
3) 도면 해석 시 상세도가 필요한 곳은 별도 상세도 첨부
4) 현실적으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
5) 실시설계 성과품의 종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2 도서 세부내용에 따르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음
6) 설계도면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고 반드시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표준도 작성
7) 설계의 원가계산, 단가산출, 일위대가, 시방서 작성은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작성
8) 기술자 누구나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9) 모든 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써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
10) 구조, 치수, 자재, 색채(색채코드 및 범위) 등 설계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공 및 제작, 설치, 유지관리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계
11) 주재료는 옥외 설치를 고려하여 야외 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도록 견고성, 내구성, 구조적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12) 기타 사항은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

라. 설계지침

1) 공통지침

㉠ 본 용역의 청년복합공간은 가설건축물과 그 외부의 야외공간으로 설계하며 3년 존치 후 존치기간 연장으로 10년 동안 시설 사용을 목적에 두고 계획

㉡ 디자인 어플리케이션, 사이니지, 공간, 가구 등 디자인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통일된 디자인 컨셉으로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설계

㉢ 건축, 구조, 설비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 건축, 조경, 실내환경 등 모든 공간계획에 유니버설 디자인 및 BF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차는 최소화하며, 경사도나 포장재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서 설계

㉥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일이 업도록 하고, 설계에 있어 의문 및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

2) 배치 및 동선

㉠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권 분석을 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정선역~사업대상지~주변건물 간 유기적 연결을 위한 Mass, 높이 등 미적 균형감을 고려하여 배치

㉢ 불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

㉣ 외부 동선에서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되도록 계획

㉤ 건축물의 외관(입면) 및 시설물은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자재 선정, 연출 방법 등을 검토

3) 에너지 분야

㉠ 냉·난방 부하를 줄이기 위한 고효율 단열 성능 방안 검토 및 설계 적용 (고성능 창호 사용, 차양장치 설치, 단열재 보강 등)

㉡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도 계획

㉢ 조명등은 조명환경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LED 조명으로 설계

㉣ 시설물 및 마감재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4) 위생설비 및 오·폐수처리

㉠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

㉡ 급수와 급탕방식은 현지 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함

㉢ 상수도는 기존 수도시설을 사용하여 설치하며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된 후 옥외 배수로에 방류토록 함(필요시 토목공사 연계)

㉣ 오수정화조 시설에 필요한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지역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시상수도 등 인입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후 인입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시설분담금은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함

5) 전기·전열

㉠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반영하고, 수전전력 용량은 현장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공급방안으로 계획

㉡ 일반용 수구는 220V 접지형을 사용하며 수구부하의 용량값은 150AVA/EA로 하여 분기회로는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각 실의 사용기자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고 충분한 콘센트를 확보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함

㉣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

㉤ 옥외사인보드, 옥외 행사용 Mic를 위한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

㉥ 내·외부 설치되는 전기선, LAN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6) 소방분야

㉠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며 건축물의 천장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소방설비 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

㉢ 건축도면의 요구 조건내용과 소방시설의 기본설계 도서가 일치하도록 설계

7) 조경분야

㉠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며 건물과 주변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기후에 적합하고 꽃 수피 등 계절별로 수목의 특징을 감상할 수 있는 수목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

㉢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선정하고 정선군 주요 식생을 조사하여 수목 선정시 반영 검토

8)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 청년복합공간의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등 내외부 공간 연출은 디자인 컨셉에 맞게 가구, 사인물, 자재 등을 활용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조화롭게 조성

㉡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설 인테리어 적용

㉢ 공간 효율을 위한 벽체형 수납공간과 가변형 벽을 적절히 구획

㉣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 벽체 마감재의 타공판 혹은 철판 등의 자재 사용을 고려하고 가구와 집기류는 이동형 혹은 가변형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야외공간 시설물의 경우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자재로 구성하고 내부 마감재의 경우 청소 및 정비가 원활한 마감재 선정

㉥ 디자인 개발된 홍보물과 시각물을 활용한 내외부 공간 연출 계획 수립

㉥ 아래 제시한 리스트 외에 청년복합공간 연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집기류, 시설물 등을 추가로 제안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가구 및 집기류, 설치물 리스트

구분	항목	최소수량	항목	최소수량
가구 및 집기류 (실내)	강의실 책상(400*1500*700 이상)	14개	라운지용 소파(의자)	-
	강의실 의자	30개	냉난방기	-
	강의대	1개	와이파이 공유기	-1개
	방송장비(엠프, 마이크)	1개	싱크대	1개
	빔프로젝터	1개	냉장고(소형)	1개
	스크린	1개	전자레인지	1개
	전자칠판(65인치 이상)	1개	정수기	1개
	파티션	-	그 외 공간연출에 필요한 집기류	-
설치·시설물 (실외)	안내사인(간판, 유도사인 등)	-	방수 차광막/파고라/썬룸 등	-
	게시판(홍보물 게시용)	-	실외조명(잔디등, 정원등)	-
	벤치	-	그 외 공간연출에 필요한 설치시설물	-

9) 기타사항

㉠ 인터넷 사용가능한 장소를 검토하여 유/무선 인프라 구축을 계획

㉡ 무선 와이파이를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

㉢ 보안 철저를 위한 잠금장치 및 내외부 CCTV 등 범죄예방 시설 설치

㉣ 주출입구(현관) 부근에 호출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 건물 설계하중과 구조 등은 재료규격 및 설계기준 강도와 용도에 따른 하중조건 등을 검토하여 각 부분별 구조계획의 안전 여부를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표준 시방서와 전문 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 관련 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3)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

4)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며,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

바. 공사내역서

1) 공사 내역서의 작성은 정부 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참조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적용하고, 안전관리비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의하여 산출

3)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함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3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3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 단,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

4)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

5)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 코드번호를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

사. 공사공정표

1) 각 공종별로 단일화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의 상관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나도록 공정표 작성(월별, 누계치 표시)

2) 총 공정 일정은실제 공사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적, 지리적, 인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여야 하며, 휴일은 일정에 산입함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 혹서, 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 기간을 부여

아. 설계도서 검토

1) 설계 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2) 각종 계산서 확인 및 검토

3)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 여부 검토

4) 검토 및 수정 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 도면 제출

5. 지식재산권 출원

가. 최종 디자인 결과물 및 제작·설치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1) 세부 출원사항 및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제작물에 대한 지적·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의 소유권은 정선군청에 귀속됨

2) 과업 완료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한 제반 서류 및 절차 등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지식재산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여야 함

3) 지식재산권 출원 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

4) 최종 디자인 결과물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함

Ⅲ 성과품 납품

1. 작성 기준

가.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사진·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고서에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 및 자료집은 색인이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다.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한문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면적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평, ha를 병기할 수 있다.

라. 최종보고서 및 가이드라인, 요약보고서의 작성은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성과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함께 제출한다.

마.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수량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바.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가. 최종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의 종이재질은 정밀사진 및 도면 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출력물은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컬러인쇄(4도 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다. 책자 형태의 성과품은 펼침 등 통상적인 열람행위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라. 성과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USB로 제출할 경우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제출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등의 사진 촬영을 위한 장비는 고화소의 중형카메라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진자료에 대한 제출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고, 규격은 화상 자료와 디지털데이터를 원칙으로 한다.

3. 성과품 납품 목록

구 분		규격	제출부수	비고
○ **최종 보고서(공간, 사인, 디자인 합본)** - 조사 및 분석 내용 - 설계 개요 및 디자인 설명 - 최종 이미지(조감도, 투시도, 목업 이미지 등) - 과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A4 (가로)	3부	컬러
○ **디자인 매뉴얼**	- 디자인 개요 - 디자인 컨셉 - 디자인 시스템 - 목업, 렌더링 이미지 -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A4 (가로)	3부	컬러
○ **홍보영상 및 굿즈**	- 디자인 소개 및 홍보영상	FHD	1식	40초 내외
	- 디자인 시범굿즈	-	-	추후협의
○ **설계도면**	- 설계도면(평면·단면·입면 및 부분상세도 등) - 주요 투시도 및 자재일람표 -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사를 위하여 요구한 사항	A3	3부	-
○ **공사비 산출내역서**	설계내역서, 관급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 산출조서, 수량 산출조서 등	A4	3부	-
○ **시방서**	공사시방서, 가구 및 비품 시방서, 구조계산서(필요시) 등	A4	3부	-
○ **마감재**	마감재 리스트, 샘플보드	-	2개	-
○ **과업 내용 수록 데이터 USB** - 도면 원본 데이터, 3D 모델링 데이터, 최종보고서 파일 등 (ai, pdf, excel, jpg, dwg, 3dm, mp4, avi 등)		-	2개	-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목차 구성, 디자인 및 편집은 발주부서와 상의하여 결정

※ 도면은 CAD 등 가용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도면명칭, 번호, 치수, 축척자 기입(치수단위는 ㎜단위 표기)

※ 도면 열람을 위한 이미지 및 ctb 파일 포함 구성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원칙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정선 청년복합공간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 조직구성,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 예정공정표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과업완료 예정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변경이나 기타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당초 과업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3) 본 용역 시행 중 관련 법력·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 본 과업 참여자의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 성격상 건축, 역사, 문화, 도시, 시각, 환경,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연구로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에게 과업의 일부를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의 참여 인력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나 대리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아.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과업 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하여 적극 포함하여야 한다.

자. 과업지시서의 문구와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상호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의견을 따라야 한다.

차. 본 설계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저작권 및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발주처는 과업 성과품을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홍보·교육자료, 출판, 전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다. 과업 성과품이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마.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내용은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바. 본 과업 완료 이후에라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사. 용역 완료 이후에 본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게 용역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보고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과업 세부 수행 계획 및 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2) 중간보고 : 2회 이상

-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연구용역 추진실적 보고(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4) 공정보고 : 월 1회

- 해당 월 과업수행내용과 다음달 과업수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후 보완하여야 함

5) 수시보고 및 회의 개최

- 회의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어 참석을 요청할 시에는 회의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하여 응하여야 함

4. 관계 기관 협의 및 자료 요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중요 사안이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처리 의견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책임의 한계

가. 설계도서 작성은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나. 설계도서 납품 후 현장 공사까지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책임진다.

다. 설계도서 납품 후 현장 공사 중 경미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라. 설계도서 납품 후 현장 공사까지 설계의 누락 및 착오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총 도급금액의 10% 이상)에 대해서는 설계자(사)가 전액 책임지며 설계도서의 수정 및 작성도 책임진다.

6.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2)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3)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5) 과업 참여 시 제출된 증빙자료가 허위 작성임이 인정될 경우

6)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7. 과업 보안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정 양식에 따라 과업참가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과업참가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 및 당해 업무에 참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관계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사진, 원고 등 본 과업의 내용물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대내외에 복사·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마.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도의적인 책임 등을 감수하여야 한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다.

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9. 기타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허가 절차상의 문제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등

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명백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획, 구성, 편집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3) 제작 목적 및 취지 등이 제작 방향과 전혀 상이한 경우

4)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과업수행자의 잘못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상환금을 부여하며, 부여 기준은 관련법에 준한다.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과업완료 이후에 본 과업결과물에 대하여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과업 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하자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